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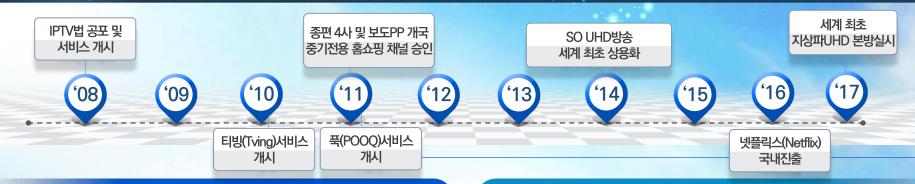


Session

미디어 환경변화 전망 및 중장기 정책방향성

발표: 이종원 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간의 정책평가('08~)



정책 성과

- 신규 플랫폼·채널 도입, 국민 시청권 확대 및 방송산업 성장에 기여
- IPTV 및 종편·보도PP, 지상파UHD 도입
- 방송산업 10여 년간 연평균(CAGR) 7.7% 성장
 *(CAGR); '09~'13 9.9%, '14~'18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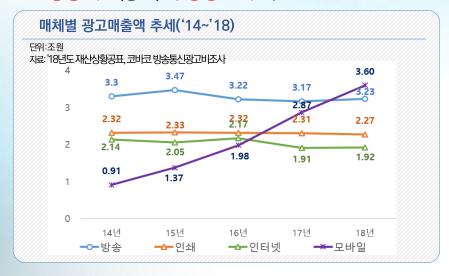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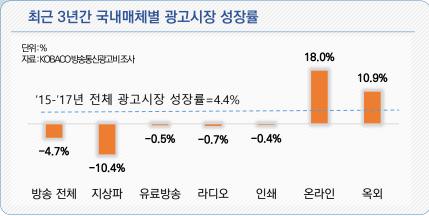
- 방송의 공적 영역 재구조화 실패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 외면
-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미흡
- 방송법, IPTV법 통합법제 무산('11, '15, '16 계류 중)
- 융합형(경계영역) 서비스 대응 부족
- OTT 동영상서비스 , 네트워크 융합(기술결합) 등 스마트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활성화 제도화 전략 부족

방송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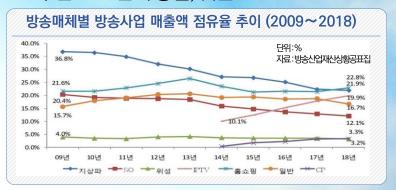
시장

• 방송재원(광고)의 성장한계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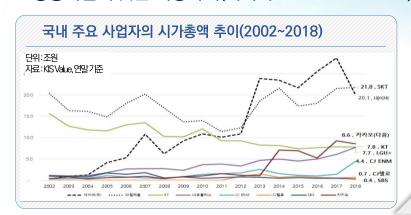




- 방송재원 위축에 따른 사업자간 갈등 고조
- 수신료 38년째 동결, 낮은 ARPU



- 방송사업자 수익성 악화 . 신규 투자 유인 부재
- 영업이익률 하락, 적자 방송사 등장
- * '19년 상반기 (KBS) -655억원, (MBC) -445억원, (SBS) -257억원
- 방송사업의 낮은 시장가치(네이버 2조 vs SBS 0.4조)



방송 현황 및 문제점

매 체

•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약화

〈주요 제작관련 인력 이동〉

합류시기	제작인력	직전소속	대표콘테츠
2011년 4월	0 ** PD	KBS	미생
3월	김** PD	KBS	개그콘서트
5월	신** PD	KBS	남자의 자격
2012년 12월	나** PD	KBS	꽃보다 시리즈
N/A	고** PD	KBS	불후의 명곡2
2014년 1월	신** PD	SBS	강심장
2011년 3월	권** CP	MBC	우리 결혼했어요
2016년 1월	김** 작가	화담앤픽쳐스	태양의 후예
2016년 1월	박** 작가	문화창고	별에서 온 그대
9월	김** 작가	KPJ	대장금

- <u>넷플릭스</u> 등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 제작요소들과의 배타적 계약 체결
- ※ 미스터썬샤인, 킹덤, 돈을갖고튀어라 등 드라마, 예능 중심 확대

• 방송저널리즘의 위상 하락, 포털의 영향력 확대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언론매체 (자료: 시사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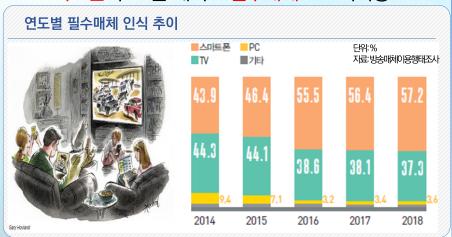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가장 열독하는 언론매체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1	ЛВС	ЛВС	ЛВС	ЛВС	ЛВС	ЛВС	ЛВС	네이버	네이버	
2	KBS	KBS	KBS	KBS	KBS	KBS	네이버	ЛВС	ЛВС	
3	네이버	네이버	조선 일보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KBS	대음 키1오	다음 키1오	
4	조선 일보	조선 일보	네이버	네이버	경향 신문	경향 신문	조선 일보	한겨레	한겨레	
5	한겨레	MBC	MBC	조선 일보	네이버	MBC	대음 키1오	조선 일보	조선 일보	
6	MBC	한계	다음 키키오	경향 산문	조선 일보	조선 일보	한계	KBS	경향 신문	

- 전통 방송사업자들의 미래 포지셔닝 불투명
- (지상파) 플랫폼 vs 콘텐츠
- (케이블TV) 로컬방송 vs 융합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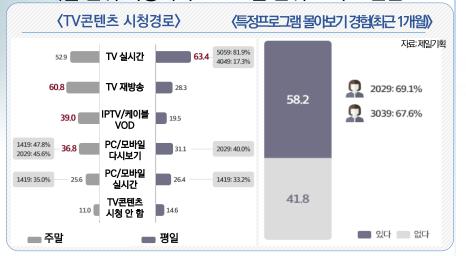
방송 현황 및 문제점

시청자(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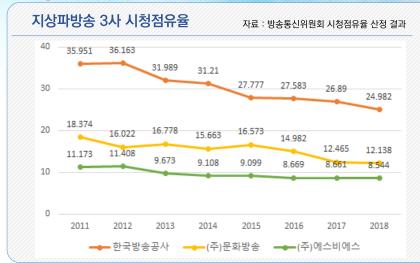
• 스마트폰이 TV를 제치고 필수매체로 포지셔닝



• 채널 단위 시청에서 프로그램 단위 소비로 전환



• 유료방송,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으로 지상파방송의 시청률 지속적으로 하락



• 1인 방송 등 시청자(이용자)능동성 강화되며, 방송의 공적 포지셔닝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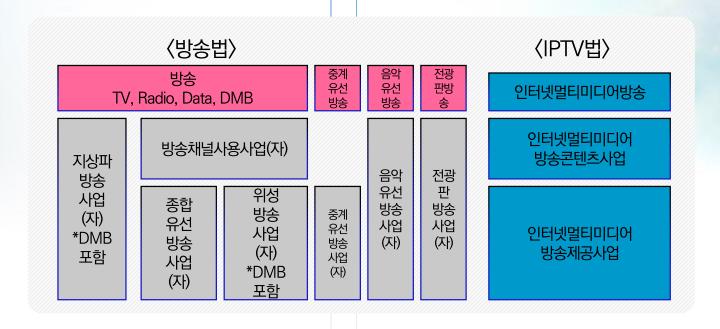


방송 현황 및 문제점

제 도

- '00년 통합방송법 체제로는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곤란
- 기술종속적 칸막이식(silo) 사업 분류 체계
- 설비 보유(방송사업자) vs 설비 비보유(OTT사업자)

- 경계영역 서비스 등장에 따른 규범체계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2003~2004) 데이터방송(T-Commerce), DMB
- (2007~2008) IPTV
- (2013~ 현재) VOD
- (2016~ 현재) OTT 동영상서비스



환경 변화

기술

- AI, Big Data, Cloud 등 미디어의 지능화
- 5G/10Giga
- 모바일 융합 확대

시장

- ▶ 글로벌 경쟁 확대
- Legacy Media 위기
 - M&A 유인 증가
 - → 유료방송 구조개편









"4G LTE시대 PC가 휴대폰으로 들어왔다면, 5G 시대에는 TV가 폰에 들어올 것이다." (박정호 SKT CEO, CES 2019)











사회·문화

- 🌞 프로슈머의 영향력 증대
- 참여형 미디어 확산













전망 및 과제



legacy media (전통적 방송) 경쟁 압력

기회, 혁신, 이익 추구 유인

인터넷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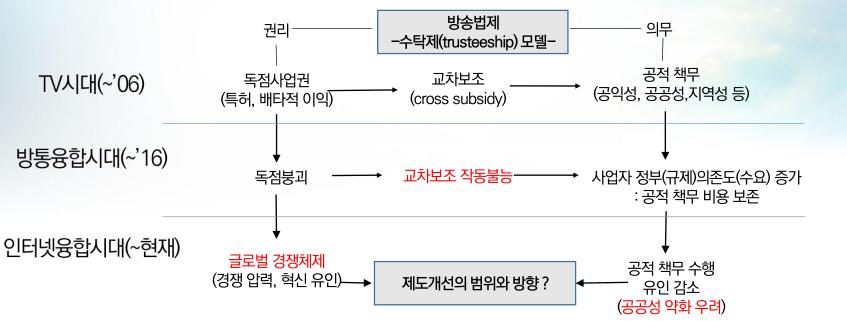
legacy media의 혁신 (신문,음반,도서,만화,게임 등)

방송의 '공공성(공적책무)' ? & 방송·미디어의 '혁신' ?

방송의 공적책무 구현의 정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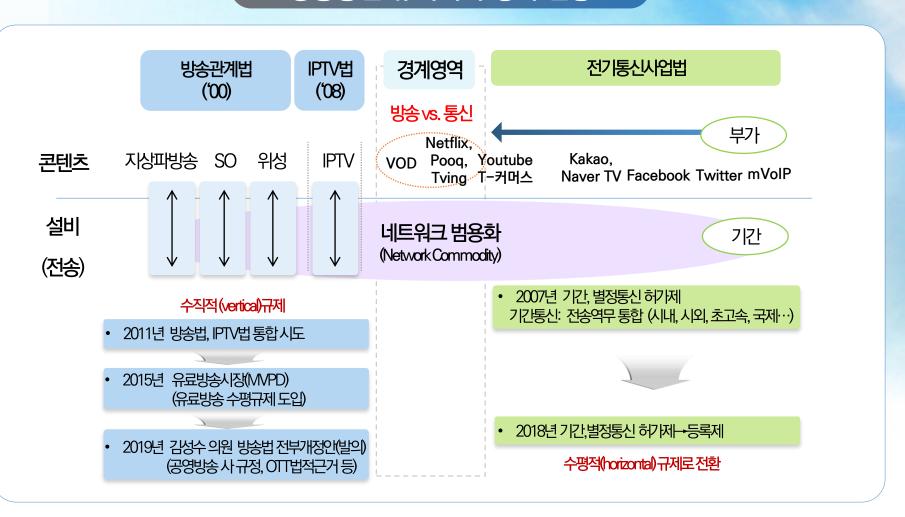






방송・미디어의 혁신 ?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현황



제도개선의 범위와 방향

- 경계영역서비스(OTT) 확산에 따른 중장기 방송통신 규제체계 수립
- 인터넷 융합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송규제체계를 재구조화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이행을 전제로, 계층별 지향가치와 영역별 세부 서비스 분류 기준 마련
- OTT 동영상서비스의 글로벌 사업자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사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방송규제체계 재구조화

- 우리사회가 방송에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고려해 규제체계를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분류
- *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그간의 '교차보조' 시스템 폐지
- 그에 대한 규율철학과 운영 기준을 확립
- (공적 영역) 민간영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성 확보
- (민간 영역) 방송사업자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 규정을 통해 상대적 자율성 ·효율성·혁신기반 조성

해외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Strategic plan (2018~2022)

디지털 격차 해소

- 광대역 네트워크 확대
- 투자 활성화 위한 최소한 규제

혁신 촉진

- -5G네트워크 투자 촉진
- -방송사업자에 인터넷 혁신 기회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 커뮤니케이션서비스 개선, 911기술개발

FCC 조직운영 효율화 및 최적화

Ofcom

Annual Plan (2019–2020)

광대역/모바일 투자 및 커버리지 확대

소비자 후생 및 공정성 제고

방송사 성장 지원

- PSB 지난 5년간 성과, 시장대응 검토
- BBC 뉴스, 시사프로그램 성과 검토

온라인 유해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환기

다양성과 사회통합 추진

B B C Annual Plan (2019-2020)

창의적, 고품질, 차별화 <mark>콘텐츠</mark> 제작

디지털 서비스의 발전

BBC 뉴스의 신뢰도 및 중립성 제고

NHK Plan (2018–2020)

공적서비스미디어로서의 지속적 진화

지역사회에 기여

미래대비(look to the future)



시사점

-해외 주요국 모두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노력

- Ex) 미국(디지털격차 해소, 혁신촉진, 소비자 보호 등) 영국(투자 확대, 방송사 성장 지원, 온라인 고려, 뉴스의 신뢰도 제고 등) 일본(공적서비스로서의 지속적 진화, 지역사회 기여, 미래대비)
- 공통적으로 '융합대응', '투자촉진', '공익제고', '소비자보호' 등을 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

제도개선의 목표



공·민영 방송규제체계 재구조화

용합시대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자 권익 강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규제의 합리화 기술발전의 제도수용성, 시장예측가능성 제고

국내외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기술중립성 지향



S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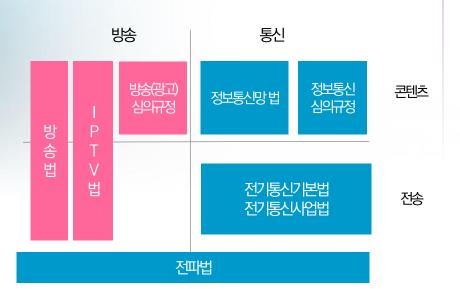
OTT 정책방향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

발표 : 황준호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현행 국내 방송·통신 규제체계

방송과 통신의 수직적 규제체계

- •서비스가 제공되는 <mark>전송망을 기준으로</mark>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규제를 차별화하는 수직적 규제체계
- 방송망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망) 서비스는 방송법, IPTV법, 방송(광고)심의규정으로 규율
- 통신망 (PSTN, PSDN, LAN, ISDN 등) 서비스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으로 규율



방송과 통신의 서비스 분류체계

- (방송) 방송(정의 및 종류)→방송사업(자)으로 분류
- 사업면허(허가, 승인, 등록, 신고)에 따라 규제(소유, 겸영, 편성, 채널구성, 광고, 내용, 요금 등) 차별

방송(정의	방송사업(자)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지상파방송시업(자) 종합유선방송시업(자) 위성방송시업(자) 방송채널사용시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시업자

- •(통신) 전기통신회신설비 보유 및 역무(서비스)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고 규제 차별
- (기간)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 또는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부가)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외) 제공 사업

해외 방송·통신 규제체계 동향

<u>수평적 규제체계 1단계 (2000년-)</u>

•기술중립 및 동일서비스·동일규제를 원칙으로 EU는 방송통신서비스를 <mark>전송계층과 콘텐츠계층으로</mark> 이원화하여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구분	전송계층	콘텐츠계층
규율대상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망)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플랫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실시간, VOD) 정보사회사비스(인터넷콘텐츠)
추구가치	경쟁활성화	사회문화적공익
규제수단	규제프레임워크 지침 (102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107년) 전지상가래 지침(102년)

- (기술중립성) 특정 서비스가 각기 다른 기술에 의해 제공되어도 기술에 따라 규제를 차별하지 않는 원칙
- (동일서비스·동일규제) 동일계층 내(전송, 콘텐츠)에 속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
- *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 1) 전송계층과 콘텐츠계층 간 규제 차별
 - 2) 전송계층 내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비차별
 - 3) 콘텐츠계층 내 서비스 간 규제 차별

수평적 규제체계 2단계 (2009년 이후)

- 방송통신 환경변화(OTT성장, 서비스 글로벌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주요 지침 개정
- (전자통신코드, '18년) EU 단일시장 활성화, ECS 개념 확장,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촉진, 이용자 보호 강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의무 강화 등
- * '02년 EU 규제프레임워크 지침을 대체
- (AVMS지침, '18년) VSP 포함, 미성년자 보호 강화, 증오유발 개념 확대, 실시간 방송 규제완화, 유럽산 제작물 쿼터제 VOD 적용 등
- * '07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을 개정
- (디지털세, '18년) EU 내 온라인 700만 유로 이상, 10만명 이상 이용자, 3000개 이상 비즈니스 계약을 맺은 기업 대상 (법인세 개념)
- * 다만, 디지털세 도입전까지 글로벌수익 7억5천만 유로, EU내 5천만 유로 이상 기업에 3% 과세(디지털서비스세)

해외 방송·통신 규제체계 시사점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정립

-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의 수직적 분류체계를 전송-콘텐츠 계층으로 이원화하여 융합으로 인한 변화를 규제체계로 포섭
- 서비스를 사업자 측면이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분류
- 각 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목표, 규제내용을 통해 서비스 활성화 및 규제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
- (전송계층) <mark>경쟁극대화</mark>를 목표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네트워크 고도화 및 서비스 활성화 추진
- * EU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방송플랫폼은 전송계층에 해당
- (<mark>콘텐츠계층</mark>) 미성년자보호, 유해물규제, 상업광고 규제, 다양성 증진 등 <mark>사회문화적 공익성</mark> 추구

OTT 서비스 규제 필요성 대두

• 방송통신서비스와 유사하지만 규제가 약했던 다양한 OTT를 공정경쟁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를 도입

통신	이디네네니시	
ECS	인터넷서비스	
OTT-0	OTT-1	OTT-2
음성전화 (공중전화망 서비스와 통화가능)	음성전화(개별번호x), 인스턴트 메시징	전자상거래, 비디오,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 (규율대상) 통신(ECC), 방송(AVMSD) 모두 규율 대상에 OTT를 확대 포함(ECS 범위 확장, VSP)
- (내용규제) OTT서비스 내용규제 강화
- * 독일(페이스북법), 영국(온라인유해물백서), 프랑스(온라인 유해물규제법) 신설
- (과세) 해외 OTT서비스에 대한 과세 추진
- * 프랑스 디지털세법 의결 (글로벌 7억5천만유로, 프랑스내 2,500만유로 이상 기업에 3% 과세)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의 개념 재정립



- (방송의 현행 법적 정의) '00년 방송법을 근간으로 하며, 과거 내용중심적 개념에서 송신방식으로 변화
- (100년 이전) 방송내용물 중심 (보도, 교양, 오락 등)
- ('00년 이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전기 통신설비에 의한 송신
- * '04년 이후 방송의 종류 개정 (TV, R, 데이터, DMB)

시기	방송의 법적 개념 변천
1963	공중에게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현상을 보도·평론하며, 교양·음악·연예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
2000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가. 지상파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다. 위성방송
2004	(상동) 가. 텔레비전방송, 나. 라디오방송, 다. 데이터방송
2006	(상동) 가. 텔레비전방송, 나. 라디오방송, 다. 데이터방송,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문제점

- 현행 방송의 정의는 지상파방송의 특성에 기반한 개념으로 유료방송은 물론, 다양한 방식의 기술진화 (양방향, 융합)를 반영하기 어려움
- 방송의 종류와 기술방식을 사전에 지정하고 있어 신유형 서비스가 등장할때마다 법적논란이 발생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이 지연
- *VOD, 8VSB, DCS, IPTV, OTT 등
- 방송의 종류와 방송사업을 분류하는 기준 사이에 정합성이 떨어져 법적, 규제적용상 혼란이 가중
- 방송의 종류(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DMB)는 전송신호 및 송수신 방식의 특성으로 분류
- 방송사업(지상파, 케이블, 위성, PP)은 전송수단과 비즈니스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의 개념 재정립



방송의 개념을 융합환경에 부합하도록 재설정

- '방송'이 아닌 '방송서비스(역무)'로 정의
-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칭) 개념 신설을 통한 방송서비스 포지셔닝

방송서비스(역무) 개념 정의

- 방송서비스를 규정하는 핵심요소를 <mark>콘텐츠 소싱</mark> (packaging)과 스케쥴링(editorial ship)으로 설정
- 방송통신설비(네트워크), 전송기술, 수신 방식. 제작은 방송서비스를 규정하는 요소에서 제외

현행

방송서비스 (실시간)

방송망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실시간, 주문형)

인터넷망 (개방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신설

- 네트워크의 특성과 관계없이 편집권을 갖고 행사하는 동영상서비스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
- 방송서비스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포지셔닝

변경안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실시간 서비스 주문형 서비스					
실시간방송	실시간OTT	VOD (방송, OTT)			
방송망 & 인터넷망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서비스 분류 체계



융합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규제체계

-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과 유사한 동영상서비스에 대해 통신규제가 적용되므로 <mark>규제 형평성 논란</mark> 발생
- TVlike OTT(실시간채널, VOD), 동영상공유OTT가 방송시장을 위협(코드커팅, 광고이동)하고 있으나, 방송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형평성 이슈가 지속
- 방송법 내 서비스 간에도 전송방식(망, 송신기술)에 따라 사업분류, 규제차별이 유지

〈방송법상 유료방송서비스 간 규제 차별〉

방송 사업	허가(시업권)	외국/신문/뉴스통신	겸영	지역/직사채널
종합 유선	(원지)(16		매출액33% 기입자1/3,채널1/5 지상파33%	지역, 직사
위성	하가(전국)	49%	매출액33% 채널1/5 위성 - SO 33%	직사
IPTV	허가(전국)		기입자1/3,채널1/5	_

현행 방송과 OTT서비스 규제 비교

적용규제	유료방송	ОП
진입	하가(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승인(종편, 보도, 홈쇼핑), 등록(일반PP)	신고(전기통신사업법)
소유겸영	1인지분 (지상파, 종편, 보도) 와국자본 (지상파, 종편, 보도, 유료방송) 대기업 (지상파, 종편, 보도) 신문, 뉴스통신사 (지상파, 종편, 보도, 유료방송) 겸영규제 (지상파, 유료방송, PP)	해당사항없음
점유율	유료방송 전체 시장점유율 33.3% 규제 매체합산 영향력 자수 시청점유율 30%	해당시항 없음 (단, 매체합산영향력 자수 산정시N스크린 시청행태조사 반영)
쏂	방송심의규정 적용	정보통신심의규정 적용
편성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지상파, 종편) 주된분야 편성비율(전문편성PP) 국내제작, 외주제작, 1개국가 편성비율 시청자 평가, 시청자제작 프로그램 편성	해당사항 없음
채널구성	전체 운용 채널 수(70개 이상) 특정채널 의무송출 (재송신, 종편, 보도, 공공, 공익, 종교, 장애인복지, 지역채널)	해당사항 없음
광	방송법 외 규제(표사광고법, 개별법령 품목규제) 방송법 규제(광고사간, 품목제한,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광고판매대행 제도 (자상파, 종편)	방송법외 규제 (표시망고법, 개별법령 품목규제)
경쟁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적용 금자행위 규제	해당사항 없음

방송통신 서비스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쟁점사항

방송플랫폼 계층의 분류

- (쟁점) 방송플랫폼을 전송계층에 포함할 것인가, 별도의 플랫폼계층으로 분류할 것인가
- (1안, 전송계층) 플랫폼 기능의 핵심은 콘텐츠 전송이며, 채널구성은 재판매이므로 편집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 (장점) 기술·서비스 혁신이 관건인 플랫폼사업의 규제 부담을 줄여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 독려
- *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플랫폼은 전송계층에 해당
- (2안, 플랫폼계층) 채널구성, 채널번호, VOD편성, 지역·직사채널 운용 등 콘텐츠 편집권이 있다는 견해
- (장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규제 필요



방송플랫폼 사업자가 B2B, B2C 양면시장에서 행사하는 직간접적인 편집권을 고려하여 플랫폼 계층을 별도로 분류

방송의 범위 (콘텐츠, 플랫폼)

- (쟁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내 방송의 범위를 현행 지상파에 한정할 것인가. 유료방송까지 포함할 것인가
- (1안, 유료방송) 유료방송까지 방송으로 포함하고, OTT서비스만 시청각미디어채널(플랫폼)으로 분류
- (장점) 융합환경에 부합, 신규서비스 도입논란 최소화
- (단점) 방송의 특수성 형해화, 통신역무와 경계 모호
- (2안, 지상파) 방송은 지상파에 한정하고, 유료방송과 OTT를 시청각미디어채널(플랫폼)로 분류
- (장점) 지상파의 특수성(무료, 공적책임) 보존. 신규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완화 견인
- (단점) 방송의 공적책임 담지자 축소



1안과 2안 복수안 제시

미래지향적 방송통신서비스 분류 체계 : 개선방안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립의 3대 기본방향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위해 기술중립성에 입각한 수평적 서비스 분류체계
- 규제목적(경쟁활성화, 사회문화적 공익성, 이용자 보호)에 부합하는 서비스 분류체계
- 규제 비례성(사업자 규모, 영향력)에 부합하는 서비스 분류체계

〈 방송통신 서비스 분류체계 A안 〉

					동영상	중심여부		
						동영상중심이님		
					시청	스바사이기막		정보사회
			실시간세스 주문형 세비스				식바	
	편 성	콘텐츠	광 개시 재생		년 면영 쟁파 PP	시청각미디어채널 (실시 <u>간</u> IOTT)	VOD서비스	인터넷신문 퍳카스트 정보OP
편 집 권	패 키 징	플랫폼	방송플랫폼 (지싱파, 유료방송)			시청각미디() (OTT)		포털, SNS, SMS, 콘텐츠플랫폼
유무	전을 이미	네트 워크	방송망(지상파, 유료방송) & 통신망(범용 인터넷망)					

〈 방송통신 서비스 분류체계 B안 〉

			동앵중심여부						
					동영상중심이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정보사회			
	실시간세비스				주문형 서비스	세스			
	퍠		사	*송방파상	채널	시청각미디어채널		인터넷신문	
	변 콘텐츠			공영	공 세 나	면영	(유료PP, 실시간(OTT)	스바MOOV	퍳산트 정보CP
편 집 권	패 키 징	影響	지상파빙송플랫폼			시청각미디() (유료방송,		포털, SNS, SMS, 콘텐츠플랫폼	
유마	조화 이미	네트 워크	방송망(지상파, 유료방송) & 통신망(범용 인터넷망)						

방송통신 서비스 분류체계 기준 설명



- (편집권) 콘텐츠 소싱 및 편성(시공간)에 미치는 사업자 영향력을 말하며, 편집권의 유무와 행사되는 지점에 따라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계층으로 구분
- 콘텐츠 계층은 개별 콘텐츠의 제작, 조달, 편성 단계에서 보유
- 플랫폼 계층은 채널구성. VOD 배치 등 패키징 단계에서 보유
- 네트워크 계층은 편집권 없음
- (동영상 중심) 콘텐츠가 동영상이 주된 서비스인지 여부에 따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정보사회서비스로 구분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동영상콘텐츠 제공이 주 서비스
- 정보사회서비스는 동영상이 보조적인 서비스
- (실시간 vs. 주문형)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시간적으로 일방향적으로 제공되는가, 양방향적으로 제공되는가에 따라 실시간서비스와 주문형서비스로 구분
- 실시간서비스는 사업자가 정한 편성시간표에 따라 콘텐츠 제공
- 주문형서비스는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A안과 B안의 비교

- (콘텐츠 계층) 실시간 서비스 하위 분류 차이
- (A안) 방송채널(지상파, PP)과 시청각미디어채널(OTT)로 구분
- (B안) 지상파방송채널과 시청각미디어채널(PP, OTT)로 구분
- (플랫폼 계층) 플랫폼 서비스 하위 분류 차이
- (A안) 방송플랫폼(지상파, 유료방송)과 시청각미디어플랫폼 (OTT)으로 구분
- (B안) 지상파방송 플랫폼과 시청각미디어플랫폼(유료방송, OTT)으로 구분
- (A안 총평) 현행 방송통신서비스 분류체계 유지 및 시장현실을 반영하는 점진적 방안
- 방송과 OTT를 동일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범주 내에 포함 하면서도 시장현실 (방송) OTT)을 반영
- (B안 총평)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유료방송과 OTT에 전향적인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 지상파방송의 독자적 규제영역 보존
- 방송과 인터넷을 포함하는 동영상서비스 시장의 미래 반영

글로벌 융합환경에서 OTT 규제방안



OTT서비스는 부가통신 규제 적용

- (적용 규제) 진입(신고), 내용(불법정보, 청소년유해물),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 •(미적용 규제) 소유겸영, 광고, 요금, 편성, 제작물, 장애인지원, 자료제출, 재난방송 등
- •OTT와 방송서비스 간 <mark>규제 불균형</mark>으로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움

공정 경쟁

- (금지행위) 방송법상 금지행위로는 방송사와 OTT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움
- * '15년 MBC-티빙 간 콘텐츠 공급중단에 관한 법원 판결
- * 전기통신법상 금지행위 중 OTT에 적용가능한 범위는 협소
- (분쟁조정) 방송사-OTT 간 분쟁 시 방송분쟁 인정이 모호하여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어려움
- * 방송법상 사업자 분쟁사유에 OTT 포함여부가 모호

내용 규제

- •(TVlike 콘텐츠)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방송심의 대상이 아님
- * '15년 tvN의 "신서유기" 사례
- 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청소년유해물, 명백한 불법정보만을 규제(공정성, 공익성 규제에 한계)
- (UGC 콘텐츠) UGC를 통한 폐해(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유해성, 상업성, 증오유발, 거짓정보)가 증가
- 통신심의는 명백하게 불법성, 유해성을 입증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내용규제가 어려움

광고 규제

- 표시광고법, 일부 품목규제만이 적용되고 있어 무분별한 광고 노출과 내용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 실시간OTT에 대해 방송법상 광고규제 미적용
- 불법적인 광고제공 사례 등(도박, 음란물, 유해물 등)

글로벌 융합환경에서 OTT 규제방안



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2대 기본방향

- OTT와 유료방송 간 유사성 및 경쟁관계에 비례하는 규제방안
- OTT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범위와 규제수준은 최소화
- ※ 규제대상: 콘텐츠 계층(실시간, VOD), 플랫폼 계층 (OTT 플랫폼)

금지행위 및 분쟁조정

- 방송사와 OTT사 간 금지행위 규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상호 마련

자료제출 의무화

- •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기초자료 (매출, 가입자, 상품정보, 요금, 이용실태등) 제공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가입자, 이용자) OTT서비스만 의무화
 - * 해외 OTT의 기초자료 제출이 시급

내용 규제

- OTT 유해물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 (1안) 방송심의규정 적용 (방송보다는 완화된 심의 기준 적용)
- (2안) 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동영상 콘텐츠 규제 조항 신설

미래형 방송(동영상)서비스 신기술 전망

4차 산업혁명 기술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VR/AR, 클라우드, 로봇 등 다양한 신기술이 동영상 서비스에 응용
- 미디어와 미디어, 이용자와 주변환경을 인지하여 연동하는 실감형, 지능형, 연결형, 맞춤형 서비스화

5G

-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초효율의 5G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연결되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혁신가속화 전망
- 초고화질·실감형 미디어, 다중플롯 콘텐츠, 멀티영상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등 확대
- 이는 다시 5G 수요를 자극하고, 다양한 ICT서비스와 융합되어 미디어 이용의 스마트화를 촉진 (선순환)
- * 세계 5G서비스 시장은 '26년에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50%에 달하는 1조 1,588억 달러로 전망 (ETRI, 2018)

ATSC 3.0

- •IP기반의 신규 전송기술로 방송서비스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
- 고품질 실감형서비스(4K UHD,3D,실감형오디오)
- 하이브리드 서비스 (방송망과 인터넷망 동시 활용)
- 멀티뷰, 멀티스크린 서비스, 맞춤형 양방향 서비스 (advanced TPEG, 타깃 콘텐츠, 타깃광고 등)
- 차세대 재난방송 (신속, 정확, 다양, 맞춤화)

알고리즘

- Al를 적용하는 알고리즘 체계로 진화하여 데이터와 미디어를 재조합하는 신규서비스 전망
- 로봇이용 콘텐츠 제작, 다양한 콘텐츠 추천 시스템, GAN을 이용한 콘텐츠 생성기술 등

미래형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현황 및 문제점

혁신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지연

- •방송법에 정하지 않은 네트워크, 송수신기술을 사용하는 신규 서비스를 사전적 기술규제
- 기술결합, 응용 등 혁신서비스 도입 지연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및 운용의 문제

- 징수대상이 허가·승인사업에 국한되며, 사용처도 미래형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함
- 수익성이 양호한 해외 사업자, 국내 사업자 (유료 PP. 인터넷포털)는 징수대상이 아님

미래형 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하는 규제와 정책

- •진입, 소유·겸영규제가 과도하며,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와 정책기조
- 대기업·외국자본 소유규제, 복잡한 겸영규제, 인수 합병 불허 사례 등

개선방안

기술중립에 입각한 혁신 서비스 진입규제 개선

- 중장기적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기반 면허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 간 기술결합 및 기술혁신 유도
- 단기적으로 <mark>신규 융합미디어 서비스 임시허가제를</mark> 통해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즉시 도입 검토

콘텐츠 진흥기금 조성 검토

- 방송통신 생태계 내 다양한 사업자(방송, 통신, 제작, CP, 가전, 포털, SNS 등)가 참여하는 진흥기금 조성 검토
- 해외 사업자도 징수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고안

미래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 •사업자 자율성,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개선, M&A 활성화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
- 사후규제 중심 전환, V커머스 활성화, 5G 시대 킬러 콘텐츠 육성 등



Session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

발표 : 이종원 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민영방송 체계 개편

검토 배경

- 우리 방송은 <mark>공적영역의 방송과 민간영역의 방송이</mark> 추구해야 할 가치와 책무가 분명하지 않음
 - * 책무(obligation)
 -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것, 약속해서 해야 하는 것, 선언적
 - *소비자기본법:소비자 책무 조항이 있음
- 방송법상의 모든 방송사업자는 공공성, 공익성 등의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 받고 있음
- 국가에서 위임한 공적가치 실현자 방송은 그간 독점적 방송구조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왔음
- 그러나 <mark>현행 방송체계는</mark> 지금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의 <mark>공적가치 실현, 융합 경쟁을 활성화</mark> 하기에는 한계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허가(승인)받은 방송사업자, 특정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사 존재
- 환경 변화로 독점구조가 붕괴함에 따라 공적 목표실현, 경쟁력 제고 기대 곤란
- 종편PP도입, OTT의 등장으로 재원확보 경쟁이 확대, 공적책무 수행 및 투자유인 감소
-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 특성, 방송사업의 유형에 상관없이 규제가 무차별

공·민영방송 체계 개편 방안(안)



소유구조, 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려해 공적영역,민간영역으로 분류

- 모든 방송사업자가 공적 가치실현과 민간영역의 혁신(투자, 성장)을 모두 부담하던 그간의 체계를 환경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분류
- 각 영역별 비전, 추구가치를 정의하고 공통의 추구 가치 재정립

공적 영역

민간 영역

비전

공공성 회복 및 강화



산업성·효율성 제고



추구 가치

공정성/형평성, 다양성, 보편적 가치



창의성, 혁신성 공정경쟁



소수자 보호, 진실 추구



정 책

공적책무를 명확히 하고 평가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검토 배경

- 방송의 공공성은 방송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규범
- -방송의 공공성은 시대, 정권에 따라 사업자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부침을 겪어 왔음
- 그간 KBS, EBS, MBC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재원 위축, 조직 혁신 부재, 신기술 수용 지체, 거버넌스 문제 등 어려움을 겪음
- 공영방송이 처한 어려움은 제도의 문제가 상당함
- 공영방송 정의, 책임과 의무, 역할, 거버넌스 등이 구체적, 명시적이지 않음

현황 및 문제점

- 방송법상 방송의 공공성 규정이 부재
- 방송법 제5조, 제6조는 가치목록적 규정으로 공공성 실현과 관련해 귀속성이 없음
- 방송법상 공영방송(KBS,EBS,MBC)의 <mark>공적책무</mark> 역시 추상적이고 선언적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이사회, 사장)가 방송의 독립성과 <mark>공공성 확보에 한계</mark>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안)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을 분리,정립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

영조물로서의 공영방송

- * 영조물(Anstalten des offentlichen Rechts), 공사(public corporation)
- 공익목적의 지속실현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물
-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혹은 공사(독일법상 영조물)
- *(BBC, 1927) 공기업, 특수법인, 칙허장에 근거해 설립
- 공영방송의 <mark>정치적 중립(</mark>완충지대 역할)을 위해 (가칭) 국민추천이사제 및 특별다수제 도입
- KBS, EBS를 현행과 같이 영조물로서의 법적 실체를 규정하고 공적 책무를 부과
- 공영방송에 부과된 특별한 책무·권한수행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규제와 지원의 차별화)

'자기규율성'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방송

- * 공공(공적)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
- 영국 PSB, 채널3(ITV)와 민영방송 채널5가 해당
- 새로운 면허체계 확립
- 방송의 공공성을 법으로 규정
- 환경변화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정당화 논거인 전파희소성, 사회적 영향력 명제는 유약
- '자기 규율성'관점에서 PSB방송을 선언
- ① 법률로 공적책무를 규정,
- ② 방송사가 공적서비스 방송임을 선언 하면(신청),
- ③ 거버넌스와 설명책임 부과하되(면허 부여)
- ④ 공적재원을 지원
- 현 MBC, 정부·공공기관 운영채널 제도개선과 연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평가방안



-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에 부여하는 공적책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혼돈이 발생
- 영국은 커뮤니케이션법과 칙허장, 프랑스 까세,
 시기마다 부각되는 가치가 다름
- KBS의 경우 추상적으로 국민에게 설명책임을 가져왔으나 설명 대상과 주체가 불분명
 - * 설명책임(accountability)/응답책임 법률용어는 아님, 계약에 의해 무엇인가 행한다는 것
- ※ 설명책임의 주체는 KBS 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KBS집행부가 국회와 방통위에 가서 설명하고, 사장이 직접 가서 설명
- 공적 책무 규정방식과 평가체계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재설계

해외 사례

BBC의 5대 공적 목표(BBC Royal Charter)

- ① 불편부당한 뉴스와 정보의 제공
- ②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 ③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 ④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
- ⑤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세계에 알림

PSB의 4대 공적 책무(Communications Act 2003)

- ① 광범위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서비스 제공
- ②다양한시청자의 요구와 흥미를 충족하는 방송서비스 제공
- ③시청자의 요구와 흥미를 균형있게 충족하는 방송서비스 제공
- ④ 프로그램의 내용, 품질, 전문적인 기술과 편집상의 통일성의 측면에서 고품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제공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평가방안



- 현행 공영방송의 <mark>공적책무 규정은 느슨</mark>하지만,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짐
 - *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 ① 공사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 ② 양질의 방송서비스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 ③ 시청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개발
- 공영방송의 경우 응답책임을 강제하는 지배구조와 수행하기 위한 흐름이 모호하고, 공적책무 설정과 평가 시스템이 불안정
- 공영방송은 3-5년 주기의 재허가 심사 시에 방송법 7대 심사항목과 제31조에 의한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
- 재허가와 방송평가는 공영,민영방송간 공적책무 수행을 차별화하여 평가하는데 한계

우리나라 공적책무 평가 방식

구분	명칭	근거
	재하가심사	방송법제17조
	VIION I PVI	방송법제10조
규제기관	방송평가제도	방송법제31조
평가/심사	000 NIT	방송법제17조3항1호
	방송심의	방송법제32조
	금지사항준수	방송법제76조의3
내부7구	지율심의기구	방송법제86조
운영/윤리 규정	방송편성규약	방송법제4조
	시청자위원회	방송법제87조
시청자참여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방송법제89조
	시청자불만 처리위원회	방송법제54조
エレフ (17:47) /	경영평가/	방송법제49조
자명가	경영평가의공표	방송법시행령제33조
정보공표	연차보고서	강제/항0님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평가방안(안)



책무는 구체적으로 규정, 책무수행 평가는 단순화

- 공영방송사는 민영방송사와 달리 보다 엄격한 평가·심사기준, 평가시스템 도입
 - 평가대상을 세분화·구체화하고, 5년 단위 평가와 1년 단위 평가(annual report)를 결합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협약'

- <mark>공적책무를 '협약'형태로</mark> 구체화, 현행 재허가 제도를 '공적책무 협약'으로 운영
- 3~5년 주기의 서비스별(TV,R,온라인 등) 공적책무 방향 수립,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회가 협약
- * 수신료를 포함한 공영방송 재원 대책과 결합
- 공적책무는 기본책무와 해당시기 특별책무로 구성
- 공영방송사가 '공적책무 이행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보고, '공영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英 BBC는 10년 단위로 왕실 칙허장(Royal Charter)을 갱신하고, BBC와 OFCOM간 공적 책무 관련 협정서 체결 → 불이행시 시정명령, 벌금 과태료 등 부과

공적 책무 수행 평가의 명확화와 분화

- '규제 필요성에서 제기되는 평가'와 '서비스 구성 목적의 평가' 구별
- 공식적 평가시스템은 응답책임의 구조와 흐름이 분명한 곳으로 집중

평가주체	1년 단위 평가	5년 단위 평가
방통위	• 방송프로그램 평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용규제	• 1년단위의평기와감사결과 포함한전반적평가
송방양동 (회사()	• 경영/회계평가 • 서비스 진행상황평가	• 전반적인평가초안제출

공·민영 방송규제 개선

검토 배경

- 방송법은 공익규제, 시장규제 부분이 약함
- 방송법상 규제는 대부분 사회문화적 가치실현을 위해 설계된 측면이 강함
- 그간 규제방식의 변화 필요성이 언급되었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규제를 지속시키려는 경로의존성이 존재
- 규제방식의 변화는 <mark>공적영역</mark>의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
- 민간영역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시
- 건전한 공·민영 방송생태계 균형 추구

규제의 유형

- o 규제 시점: 사전(ex ante)규제와 사후(ex post)규제
- (사전규제) 행정객체의 법률행위 이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 (사후규제) 행정객체가 어떤 행위를 한 후 객체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 o 규제 방식: 구조, 행위 또는 행태규제
- -(구조규제) 시장구조와 관련된 원인적 규제방식
- (행위규제) 특정한 행위, 일련의 행위과정을 대상
- (행태규제) 시장구조 상수, 시장행위 또는 상태에 의해 폐해가 나타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상태를 규제
- o 규제 목적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공·민영 방송규제 개선



- 현 방송법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많은 사전규제를 부과
- 방송법은 공익규제의 성격을 갖지만, 경쟁 등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 취약
- 공익규제의 경우 공익실현의 목적을 달성 못했거나, 사업자간 경쟁을 왜곡하는 규제들 정비 필요



방송법상 규제 현황

구분			주요규제
구조 규제 사전 규제		진입규제	협의의 진입규제 :
			허가, 승인(제9조) 및 재허가, 재승인(제17조)
	77		기업결합규제:합병등변경하가(제15조)
	-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제15조의2)
	ㅠ세		탈퇴규제:폐업 및 휴업신고(제84조)
		소유겸영	소유제한 규제(제8조, 제14조)
		규제	시업겸영금지(제8조)
		행위규제	이용약관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의무(제77조)
	÷U⊏11		방송편성 규제(제69조)
	행태		방송광고규제(제73조)
	규제	상태규제	경쟁상황평가 제도(제35조의5)
			시청점유율 규제(제69조의2)
사후	행태	행위규제	금지행위 규제(제85조의2)
규제	규제	내용규제	방송내용 규제(제32조, 제33조)

공·민영 방송규제 개선 방안(안)



규제의 구조 및 유형을 재구조화하고 단계적으로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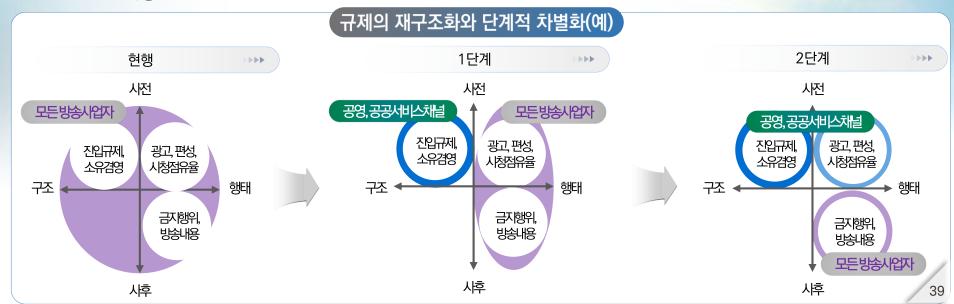
- 현행 규제의 구조를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전송계층과 콘텐츠 계층)으로 분류
- 영역별, 계층별 특성에 부합하게 규제의 유형을 재구조화 및 차별화

공적 영역

- 공영방송, 공공서비스채널의 경우 특수성 반영해 현행 '사전-구조규제' 유지
- 공적 가치 강화, 시장에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민간 영역

- 정책목표를 고려해 전송(플랫폼)계층과 콘텐츠 계층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
- (전송계층) 경쟁활성화를 목표로 '행태규제'
- (콘텐츠계층) 공익성제고를 목표로 '사후-행태 규제'



시청자 권익 강화

검토 배경

-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시청자 보다는 이용자 이익 보호에 집중되어 온 경향
- 이용자이익침해행위, 이용자권익 등소비자보호
 측면이상대적으로강했음
- 반면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에 접근하고, 방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결여
- 참여, 공유의 시대적 가치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정책에 시청자의 입장과 관점이 반영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시청자의 참여, 비판을 통한 미디어의 공적 가치 실현의 장치 필요
-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 인정과 이를 위한 토대 마련 필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컨퍼런스 '19.11.12)

현황 및 문제점

- 방송에서 시청자 권익이 중요시되는 것은 '수탁자(trusteeship) 모델'에서 기인
- 동모델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반영
- 우리 방송에서 시청자 권익의 중요성은 '00년 제정 방송법에 최초 반영
-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송법 제35조)와 시청자위원회(동법 제87,88조)가 대표적
- 그러나 동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 진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운영상 문제)
- 시청자위원회의 입법취지와 방송제작현장간 괴리

시청자 권익 강화 방안(안)



수탁자 모델의 '수동적 권익보호'에서 '능동적 시청자 참여모델'로 전환

• 시청자 권익보호의 주안점을 '불만처리' 수준의 소극적 측면에서 '접근(access)' 적 관점의 적극적 측면으로 확대

정책·제도 측면

- 국민참여강화
- 주요 방송사 재허가, 국민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한 정책결정시
 국민청문제도 검토
- 재허가심사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활용 확대,
 방송평가항목 중시청자참여평가항목강화
- 공영방송이사,사장선임시국민참여방안마련
- 시청자권익 전담기구설치 등
- 미디어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독립화
- 미디어 교육 확대
- 전국단위로 미디어센터 확대(17개광역자자체센터목표)
- 국민콘텐츠 활용능력 제고, 정보판별력 강화를 위한 비판적 미디어 교육 강화

방송 운영 측면

- 시청자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
-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
 (시청자위원회 추천위 내실화)
- 공공서비스방송 면허를 갖는 시업자에 <mark>한해 시청자와의</mark> 직접소통확대
- 지역시청자 참여 기반 강화
- 공동체라디오시업 전국확대
- 마을미디어 활성화지워
-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채널(시간대별) 운영 등
- 지역 시청자미디어재단과의 연계성 강화



방송재원의 위상정립 및 다각화



- 방송의 물적토대, 방송재원이 취약해지고 있음
- 방송재원의 취약함은 제도의 문제와도 관련
- (배분의 문제) 비대칭규제, 교차보조
- (재원확대 가능성 제약) 광고판매제도 등
- 취약한 방송재원은 공적서비스(콘텐츠) 제공의 불확실성 증대, 혁신 유인을 소멸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혁신을 위해 재원을 '공적 재원'과 '상업적 재원'으로 정립

- (공적재원) 공영방송, 공공서비스채널(PSB)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제한
- (상업적 재원) 방송 및 관련시장에서의 상업적 활동을 통해 발생된 수익(정부지원 제한)

공적 재원

- 공민영체계 개편에 기반한 TV수신료, 기금 등 관련 재원 개선
- 공적 재원 기반 사후유통시장(인터넷유통포함) 수익은 제한적 허용
- 콘텐츠 재투자 유도 (가격정책 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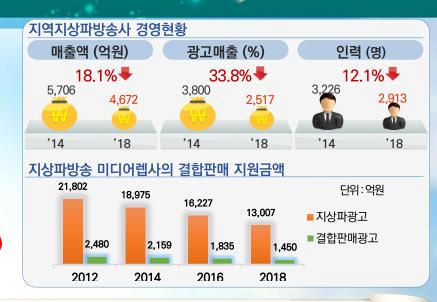
상업적 재원

- 방송광고시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 지상파, 유료방송 광고규제 전면 재정비
- 현행 지상파, 종편PP 미디어렙 제도에 대한 재평가(도입 취지의 유효성)

지역성 구현 기반 확대

<u>(</u> 현황 및 문제점

- 미디어 환경변화로 지역방송의 생존이 어려움
- 지역성 기반 확충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
- 지역방송(지상파, SO)시청유인 감소
- 지역성 재구성, IPTV 지역성 구현 의무 부과 등
- 글로벌, 융합환경에서 지역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지역성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성 구현방식 재설정

- 지역성 구현 책무는 부여하되, 최소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 검토
- 현 지역성 관련 제도를 어떤 매체에 어떤 방식으로 유지·보완할지 검토

동반상승(synergy) 유인

- 지역방송사간 겸영규제 개선 검토
- -(찬성) 투자 및 관련 방송사업자 인접시장 진입 유도
- -(반대) 대주주 사유화 가능성, 투자 제한적
-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해 지역성 구현의 권역 제도 적절성 검토

재원의 불확실성 관리

- 중앙방송(key station)의 방송광고결합판매 방식 검토 (중앙방송사 판매실적이 지역방송의 경영에 영향)
- -공적재원의 활용성 제고 vs 지역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 방송콘텐츠 수급 환경의 현실화(수중계 편성기준)
- -수중계 편성기준을 자체제작편성기준으로 전화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 & 네트워크 효율화



-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의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사후에 관습적으로 부과한 것
- 지상파방송의 보편적서비스는 주파수 도달 범위를 넓힘에 따른 편익과 비용 사이에서 고민해온 역사
- 정책상 '무료 보편적 수신 범위 및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방송을 통해 포괄범위를 확대해온 것이 문제
- 지상파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
- ※ 직접수신을 통한 접근 5% 미만, 90%이상이 유료방송서비스를 통해 접근



보편적 서비스 대상 규정, 네트워크 운영의 유연성 확보

보편적 서비스 대상 규정

- 무료 보편적 접근과 이용이 필요한 서비스를 규정
- 공적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가 '기본적 서비스'로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ex.재난방송)
- 그에 대한 접근 수단(기본적+대안적)을 정립
- ※ 보편적 서비스와 의무재송신 (KBS1, EBS), 보편적 시청권은 구분됨

네트워크 운영의 유연화

- 지상파 송출네트워크 외에 <mark>다양한 이종 네트워크들간의</mark> 결합 및 협업 등을 위한 제도개선
- 주파수 할당방식(RF only), IP only에서 전송방식별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결합 허용
- 네트워크 운영효율화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